

			보 도 자 료 1월 28일(금) 조간 (1.27.12시 이후 보도)	
배 포 일	2022. 1. 27. / (총 4 매)		담당부서	보건 의료정책과
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과	과 장	고 형 우	전 화	044-202-2420
	담당자	이 준 미 심 민 정		044-202-2402 044-202-2409
대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	위원장	김 록 권		02-793-4100
	팀 장	전 지 숙		
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	위원장	박 상 현		02-2024-9133
	과 장	류 정 호		
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	위원장	성 낙 온		02-2657-5030
	과 장	서 정 민		

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

-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입소문(바이럴)마케팅 등 온라인 불법의료광고
엄정 대처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*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, 2022년 2월 3일(목)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**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: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 의사협회(의료광고심의위원회), ②대한치과의사협회(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), 대한한 의사협회(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)에서 설치·운영 중

** SNS, 포털사이트, 블로그, 온라인 커뮤니티 등

□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(바이럴)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- 의료법(제56조제1항)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,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.
- 이는 ‘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 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’이다.(대법원 2009.11.12. 선고 2009도7455 판결)
- 특히, 미용·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이를 겨냥한 입소문(바이럴)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.
- 이에 따라,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.
-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.

◆ 모니터링 절차

- 모니터링 실시(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) → 위법 의료광고 확인(복지부) →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·행정처분 등 요청(복지부)

◆ 처벌(분) 기준

- (환자 유인·알선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
- (거짓·과장 광고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~2개월
- * 비의료인의 경우 처벌 기준 적용

-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 의료정책과장은 “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
-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(의료광고기준조정 심의위원회위원장)은 “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,
-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